

상 고 장

사건 번호 2012나35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명숙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로2길 9-6 (우 701 - 802)

전화번호 : 010 - 9210 -0000

피고, 피상고인 합천군

법률상 대표자

군수 하 창 환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우 678 - 800)

위 상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2나353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하여 2013. 8. 23.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는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합니다(상고인은 2013. 8. 23.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불복정도 및 상고범위

원고(상고인)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 고 취 지

1.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2. 피상고인은 상고인에게,
 - 가. 73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2011. 6. 11.부터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770-1 전 96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 ㄷ 부분 375㎡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14,370원을 지급하며,
 - 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770-1 전 96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 ㄷ 부분 375㎡를 상고심 종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정지목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이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 3심 모두 피고(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상고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별지, 지적현황성과도 1부
- 1. 인지대, 송달료 계산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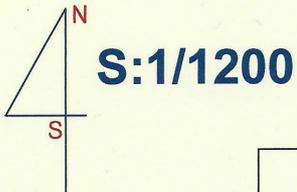
2013년 8월 30일

위 상고인, 원고 김 명 숙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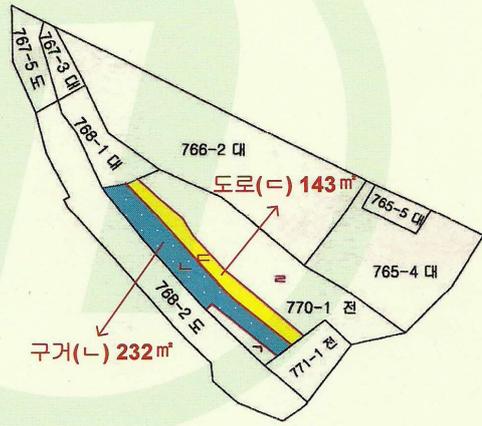
개 황 도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범례	명칭
ㄱ	축사로 사용중
ㄴ	구거로 사용중
ㄷ	도로로 사용중

지번 부호	면적(㎡)
770-1 ㄱ	42
770-1 ㄴ	232
770-1 ㄷ	143
770-1 ≡	552
770-1	969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	평가건물 3층이상
평가대상토지	도로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도로	도시계획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평가대상)

(주)하나감정평가법인
Hana Appraisal & Consulting Co., Ltd.